

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 -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